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종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420

발의연월일 : 2021. 2. 26.

발 의 자:최종윤·김승원·김진표

도종환 · 양경숙 · 양정숙

오영환 · 오영훈 · 유정주

이인영 · 인재근 · 임종성

한병도 • 허종식 • 홍기원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시설의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부여하고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아동·청소년이 여전히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동·청소년 이용시설의 흡연실 설치를 제한하고, 현행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 금연구역의 범위를 확대하며, 유치원 및 어린이집 부근과 마찬가지로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따른 학교 부근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서 학교·어린이집 등 아동· 청소년 이용 시설을 제외하고, 유치원, 어린이집 및 「초·중등교육 법」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).

법률 제 호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흡연자를"을 "제6호·제9호·제 10호·제12호를 제외한 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를"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제1호 및 제2호 중 "10미터"를 각각 "30미터"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흡연실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설치된 흡연실은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폐쇄하여야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	제9조(금연을 위한 조치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	4
하는 시설의 소유자・점유자	
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	
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	
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	
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<u>흡연자</u>	<u>제6호 • 제9</u>
<u>를</u>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	호·제10호·제12호를 제외한
있으며,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	시설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
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	리자는 흡연자를
·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	
정한다.	
	<u>,</u>
1. ~ 26. (생 략)	1. ~ 26. (현행과 같음)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
⑥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	6
지사・시장・군수・구청장은	
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	
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	
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	
구역으로 지정하고, 금연구역임	

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- 「유아교육법」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중의 통행・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
- 2.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공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

<신 설>

⑦ ~ ⑨ (생 략)

1.	
	<u>3</u>
	0미터
2.	
	<u>30미터</u>
0	[그 ㅈㄷㅋㅇ미 제 ᆔㅋ
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(일반 공 중의 통행·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)

⑦ ~ ⑨ (현행과 같음)